

TaxFlash



Special Economic Zones 특별경제지구

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지역을 특별경제지구(Special Economic Zone, Kawasan Ekonomi Khusus/KEK)로 지정하여 발표하였다.

정부는 2015년 12월 28일에 정부령 No.96/2015(GR-96)을 발표하여 KEK 내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조세혜택을 발표하였다. 이번 조세혜택은 소득세, 부가세, 사치세, 수입세 및 소비세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 현재까지 가장 포괄적인 조세혜택으로 볼 수 있다.

GR-96 will be effective 60 days after enactment (from 25 January 2016). Currently, there are eight areas designated as KEKs, being:

GR-96 은 규정 제정 60 일 이후인 2016년 1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 현재까지 아래의 지역이 KEK 로 지정되었다.

1. Sei Mangkei
2. Tanjung Api-api
3. Tanjung Lesung
4. Mandalika
5. Maloy Batuta Trans Kalimantan
6. Palu
7. Bitung
8. Morotai

특별경제지구(KEK)가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다양한 지역에 지정이 됨에 따라 플랜테이션, 로지스틱스 및 관광산업에 이르기까지 영역이 다양하다. 각 특별경제지구별로 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 되는 주요 산업은 각각의 규정에 명기되어 있다. 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납세자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KEK National Council 의 공식 웹페이지를 참조하여야 한다.

1. Tax and customs facilities : 조세혜택 및 관세혜택

A. General requirements : 일반 요구 사항

특별경제지구 내에서 조세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하기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

a) KEK의 사업활동을 구성하는 납세자인 경우 (*Badan Usaha*):

- KEK을 개발 또는 관리하는 사업체로서 관련 정부기관에 등록이 되어야 함
- 관련 정부 기관과 KEK에 대한 협약서를 보유하여야 함
- KEK의 활동의 지역을 설정하여야 함.

b) KEK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의 경우(*Pelaku Usaha*):

- 내국 납세자여야함
- KEK의 관리자(Administrator of the KEK)로부터 승인받은 신규 자본 투자 계획을 보유하여야 함
- 관세청(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)과 연결된 정보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함

B. Income Tax facilities : 소득세 혜택

a) *CIT Reduction* : 법인세 감면

KEK의 주요 사업 영역에서의 생산체인에 신규로 투자하는 신규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투자계획 (Rp in billion)	감면기간	법인세 감면율
> Rp 1,000	10년 - 25년	20% - 100%
Rp 500 up to Rp 1,000	5년 - 15년	
< Rp 500	5년 - 15년	재무부에서 별도 규정함

b) *Income Tax Allowance* 소득세 혜택

법인세 감면 혜택을 기각당한 납세자가 KEK내에서 다른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하기에서 설명하는 소득세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.

- 매년 유형자산(토지포함) 투자금액의 5%씩 6년의 상업생산기간동안 총 30%까지 과세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며, 투자된 자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일정기간 동안 양도되지 아니하여야 함.
- 세무상 가속상각이 가능함

-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원천징수세율이 10%로 경감(조세조약상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조세조약을 적용함)
- 이월세액공제가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

KEK규정과 별도로 유사한 법인세 경감 및 소득세 혜택과 관련된 규정은 이미 소득세법 및 투자법에 규정되어 있다. 그러나 KEK내의 납세자는 GR-96에 따른 법인세 경감 및 소득세 혜택만을 적용 받을 수 있다.

납세자는 상기의 법인세 경감 및 소득세 혜택 이외의 기타 소득세법상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.

기타 소득세법상 혜택의 신청은 반드시 관련 KEK의 관리자를 통하여 재무부에 제출이 되어야 한다. 납세자는 신청사항을 승인받는 경우 투자 및 생산 달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납세자가 하기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혜택은 철회 될 수 있다. 이 경우 납세자는 경감받은 법인세(패널티 포함)를 납부하여야 한다.

- KEK내의 주요 활동의 생산체인의 요구사항(법인세 경감 관련)
- 자본 투자 이행
-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

C. Other tax facilities 기타 조세 혜택

KEK내의 납세자는 상기에서 언급한 소득세법상 혜택 이외에도 하기의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- 특정 재화의 구입 및 수입에 대한 부가세 및 사치세의 미징수
- KEK내의 납세자간 특정 재화의 이동에 대한 부가세 및 사치세의 미징수
- 제22조 수입관련 원천징수세의 미징수
- 자본재 및 장비, 재화 및 프로세싱을 위한 원재료에 대한 수입관세의 유예. KEK의 개발을 위한 자본재의 수입관세는 면제됨.
- 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소비세 면제

KEK에서 반출되는 재화는 목적지에 따라서 하기와 같이 소득세 및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.

목적지	소득세 및 관세
관세 지역 외부로 반출(수출의 경우)	수출 관련 현행 규정 적용
특정 허가(special concession)를 받은 관세 지역내에서의 이동	목적지 내의 적용 가능한 조세 및 관세 혜택 적용

기타 관세 지역(*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/ TLDDP*)으로 반출(수령인이 소득세 및 관세와 관련하여 어떠한 혜택도 승인받지 못한 경우)

기존에 미징수, 면제 또는 유예된 수입관세 소비세, 수입세(부가세, 사치세 및 소득세법 22조)를 납부하여야 함.

D. Tax facilities for special activities in a KEK : KEK내에서의 특별활동을 위한 조세혜택

관광업과 관련한 KEK내에서는 하기의 조세혜택이 가능하다.

- 외국인에 대한 부가세 환급(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)
- KEK지역내의 주택구입 관련 소득세법 22조 및 사치세의 면제
- 지방세 및 (지역)부담금의 면제 또는 경감

KEK 내에서의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도 조세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세혜택의 조항 및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될 예정이다.

2. Other facilities 기타 편익

KEK내의 납세자는 상기의 모든 조세편익 이외에도 재화의 이동, 인력고용, 출입국 관련, 토지조달 및 허가와 관련하여 편익을 누릴 수 있다.

각 KEK의 관리자는 상기의 편익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.

재화의 이동과 관련한 KEK내에서의 편익은 다음과 같다.

- 수출과 수입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약사항도 적용되지 않는다. 다만, 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적용이 되어야하며 MoT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- 수출목적의 원산지증명서(Certificate of Origin)의 취득이 간편해 진다. 각 KEK의 관리자가 MoT를 대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.
- KEK내의 납세자는 KEK내로 수입된 재화를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여 기타관세지역으로 직접 반출할 수 있다. 따라서 기타관세지역내의 납세자는 관련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여 수입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KEK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KEK의 관리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외국인 고용 및 활용 계획(Expatriate Manpower Utilisation Plan), 관련 취업 허가증(working permit) 및 임시 거주 승인서(residency permits)를 취득하여야 한다. 외국인 고용인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영구 거주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.

KEK의 관리자는 토지조달 및 허가와 관련하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가단일창구(National Single Window)정책을 따라야 한다. 투자승인은 신청서 제출 이후 3시간 이내에 발급이 될 수 있다. 일반적으로 three-hour 서비스는 투자규모 및 내국인 고용요건을 만족한 납세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하다.

Korean Business Desk Contact

정태훈 회계사 (taehun.jung@id.pwc.com)

남승수 회계사 (seungsu.nam@id.pwc.com)

Your PwC Indonesia contacts

Abdullah Azis

abdullah.azis@id.pwc.com

Adi Poernomo

adi.poernomo@id.pwc.com

Adi Pratikto

adi.pratikto@id.pwc.com

Alexander Lukito

alexander.lukito@id.pwc.com

Ali Widodo

ali.widodo@id.pwc.com

Andrias Hendrik

andrias.hendrik@id.pwc.com

Anthony J. Anderson

anthony.j.anderson@id.pwc.com

Anton Manik

anton.a.manik@id.pwc.com

Antonius Sanyojaya

antonius.sanyojaya@id.pwc.com

Ay Tjhing Phan

ay.tjhing.phan@id.pwc.com

Brian Arnold

brian.arnold@id.pwc.com

Engeline Siagian

engeline.siagian@id.pwc.com

Enna Budiman

enna.budiman@id.pwc.com

Felix MacDonogh

felix.macdonogh@id.pwc.com

Gadis Nurhidayah

gadis.nurhidayah@id.pwc.com

Gerardus Mahendra

gerardus.mahendra@id.pwc.com

Hanna Nggelan

hanna.nggelan@id.pwc.com

Hasan Chandra

hasan.chandra@id.pwc.com

Hendra Lie

hendra.lie@id.pwc.com

Ivan Budiarnawan

ivan.budiarnawan@id.pwc.com

Laksmi Djuwita

laksmi.djuwita@id.pwc.com

Lukman Budiman

lukman.budiman@id.pwc.com

Mardianto

mardianto.mardianto@id.pwc.com

Margie Margaret

margie.margaret@id.pwc.com

Parluhutan Simbolon

parluhutan.simbolon@id.pwc.com

Peter Hohtoulas

peter.hohtoulas@id.pwc.com

Runi Tusita

runi.tusita@id.pwc.com

Ryuji Sugawara

ryuji.sugawara@id.pwc.com

Soeryo Adjie

soeryo.adjie@id.pwc.com

Sutrisno Ali

sutrisno.ali@id.pwc.com

Suyanti Halim

suyanti.halim@id.pwc.com

Tim Watson

tim.robert.watson@id.pwc.com

Tjen She Siung

tjen.she.siung@id.pwc.com

Yessy Anggraini

yessy.anggraini@id.pwc.com

Yuliana Kurniadjaja

yuliana.kurniadjaja@id.pwc.com

Yunita Wahadaniah

yunita.wahadaniah@id.pwc.com

www.pwc.com/id

 [PwC Indonesia](https://www.linkedin.com/company/pwc-indonesia)

 [@PwC_Indonesia](https://twitter.com/PwC_Indonesia)

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,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, or send an email to contact.us@id.pwc.com

DISCLAIMER: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,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.

© 2016 PT Prima Wahana Caraka. All rights reserved. PwC refers to the Indonesia member firm,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.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. Please see www.pwc.com/structure for further details.